# 신용정보 활용체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신용협동조합(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며 이하 '신협'이라 합니다)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 ■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### □ 이용목적

-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,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, 금융거래관계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,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,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처리
- 민원 처리
-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(일반전송, 마이데이터전송) 이행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#### □ 신용정보의 종류

### 1. 개인

- 1) 식별정보
  -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### 2) 신용거래정보

- 대출 및 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대출현황, 당좌예금·가계당좌예금 의 개설 및 해지 사실,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
-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신용카드의 발급·해지 사실 및 결재·미결재 금액(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)
  - ②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이용금액, 이용한도,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한도
  - ③ 신용카드의 분실·도난 등 사고발생,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, 그 밖의 사고종 결의 처리 사실
- 보험(공제 포함. 이하 같음)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[보험계약자가 기업,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(보험수익자, 피보험자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개인인 경우 에는 그 보험상품을 포함]

- ①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보
-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

### 3) 신용도 판단정보 등

- 대출금, 신용카드 대금,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
- 대위변제·대지급 발생사실
- 어음·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
- 대위변제·대지급 발생사실
- 증권의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 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
  -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
-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무란하게 한 사실
  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
  - ③ 보험사기 사실
  -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
-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법원의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, 파산선고·면책·복권과 관련된 결정,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·말소 결정 사실
  - ② 국세·지방세·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·과태료·과징금·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
  - ③ 사회보험료·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
  -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·사망·이민·부재에 관한 정보,주민등록번호·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
  -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

### 2. 기업 및 법인

- 1) 식별정보
-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, 본점·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, 종목, 대표자의 성명·개인식별번호

#### 2) 신용거래정보

- 대출·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대출·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
  - ② 시설대여, 신용보증, 보증보험,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
  - ③ 당좌예금·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
  - ④ ①부터 ③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·시장성·사업성

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

-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신용카드의 발급·해지 사실 및 결재·미결재 금액(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)
  - ② 신용카드의 분실·도난 등 사고발생,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, 그 밖의 사고종 결의 처리 사실

#### 3) 신용도 판단정보

- 기업 및 법인의 신용도 판단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대출금, 신용카드 자금,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
  - ② 대위변제·대지급 발생사실
  - ③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
  - ④ 어음·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
  - ⑤ 무보증사채의 상환불이행 사실
  - ⑥ ①부터 ⑤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·시장성·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대출, 신용보증 등에 대하여 연체, 대위변제 등이 발생한 사실
- 증권의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 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
  -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
-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무란하게 한 사실
  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
  - ③ 보험사기 사실
  -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
-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법원의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, 파산선고·면책·복권과 관련된 결정,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·말소 결정 사실
  - ② 국세·지방세·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·과태료·과징금·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
  - ③ 사회보험료·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
  -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·사망·이민·부재에 관한 정보, 주민등록번호·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
  -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

#### 4)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

-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 사이에서 처리된 다음의 신용정보(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 등)
  - ①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
  - ②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
  - ③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 간의 권리·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
-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
-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제외
- 5)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
- 계열기업체 현황 등 회사의 개황
- 사업의 내용
-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
- 자본금 증자 및 사채 발행 현황
-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
  - ①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·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
  - ②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
-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, 휴업·폐업, 양도·양수, 분할·합병,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

# ■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, 제공 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### □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식별 정보
- 신용거래정보
- 신용도판단정보
-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
-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등

### □ 제공대상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
- 신용조회회사 :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NICE신용평가정보(주) 등
- 제휴업무(해당 대출에 한함)기관 : ㈜서울보증보험, ㈜KB손해보험,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 등
- 재보험사(공제업무에 한함): 코리안리, 삼성화재해상보험(주), 에이스손해보험(주), Gen Re, Munich Re. 등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-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기관
  - ① 마이데이터전송(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)
  - ② 일반전송(정보주체 또는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)

## 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-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
- 제휴업체 : 제휴업무 수행
- 재보험사 : 재보험
-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을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

# ■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, 파기의 절차 및 방법

# □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- 금융거래 :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까지(법규에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법규에 따름)
- 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신용정보 :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정보주 체의 신용정보 제공·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
- 민원사무처리 : 민원처리 종료 후 5년
-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관리·보관 : 전송요구일로부터 조합거래종료일까지

# □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

- 파기절차

파기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(또는 신용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용정보(또는 신용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
#### - 파기방법

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·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# □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신협은 원활한 신용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조합명	수탁자	위탁업무의 내용	비고
대구대서신협	법무법인 덕수	근저당설정업무 등	
대구대서신협	프라임감정평가법인	차주물건 감정평가업무 등	
대구대서신협	법무사 김태원	근저당설정업무 등	

신협의 신용정보 위탁내용입니다.

\* (삭제) '붙임3'의 동일 내용 기입

# ■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
## □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

- 제공·이용현황 조회요구
-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- 본인 신용정보 정정요구
-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
- 삭제 요구
-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
-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
-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
-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내역의 통지 요구권

## □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방법

- 정보주체는 신용협동조합(중앙회)에 대해 서면, 전화, 모사전송(FAX)등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정보주체는 앱, 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,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의 철회 또는 정정은 요청하신 앱, 웹 등을 통해 서만 처리 가능합니다.

# ■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
## 대구대서 신용협동조합

-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: 이 창 호 (053-352-5700)

- 주소 :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21길 41

- 담당부서 : 여신관리팀

- 연락처 : 010-6556-9500 / E mail : cu09301@cu.co.kr

# ■「신용정보 활용체제공시」의 변경

※ 과거 공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고객권리안내문

# ■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

고객의 개인(신용)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.이용 및 제공됩니다. 필수적정보에 대한 수집.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사항에 동의하셔야만 (금융)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.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,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(금융)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 ■ 고객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

- 가.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 신협 및 중앙회의 금융상품(서비스)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·활용을 「개 인정보보호법」제37조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7조에 따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 다만,
  -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\*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- 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③ 개인(신용)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.활용 중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- ※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나. 본인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·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유선이나 신협을 방문하여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용정보담당자 및 책임 자 또는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연락처

- 신용정보담당자(책임자) : 010-6556-9500 (이창호 상무) (053-352-5700)

(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21길41)

-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: 민원실 (국번없이)1332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)

# ■ 고객 개인(신용)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

가. 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협 인터 넷홈페이지(www.cu.co.kr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연락중지청구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(www.donotcall.or.kr)에서, 그 밖의 권리는 거래 하는 신협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[개인(신용)정보 이용·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)]

\*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신 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# [개인(신용)정보 이용·제공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권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제2항)]

\*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

# [개인(신용)정보 열람 및 오류 정보의 정정.삭제 요구권(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)]

\* 당 신협에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 리

### [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)]

\*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, 그 이용 목적,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### [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)]

\*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거절,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#### [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2)]

- \*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 자동화평가를 하는 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나. 고객은 본인 개인(신용)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(NICE지킴이, 사이렌24, 올크레딧 등)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□ 연락처

- NICE지킴이 : ☎ 02) 1588-2486 / www.credit.co.kr - 사이렌24 : ☎ 02) 1577-1006 / www.siren24.com - 옼크레딧 : ☎ 02) 708-1000 / www.allcredit.co.kr